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논란 가중

산업현장 “업무의 전문성 약화” vs 고용부 “실무 능력 강화”

최근 정부가 마련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선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달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556개의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기능사 및 산업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약 30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중 적용이 가능한 종목부터 우선적으로 선정,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이 발표된 이후에 해당 입법예고란에는 벌써 300여건에 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이 문제는 산업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국가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면서 자격증의 가치가 하락함은 물론 해당업무의 전문성도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산업현장 관계자는 “합량미달인 자격자들의 진입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자들까지 하향평준화 되어 저평가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특정기관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현장 관계자는 “검정평가 없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면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며 “이런 방식의 자격증 수여라면 형평성에 맞게 다른 분야(세무사, 변호사, 의사 등)의 자격시험에도 적용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는 안전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고 있다. 안전관리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안전분야 관계자들은 이들 안전자격증이 시행종목에 포함되면 안전관리의 질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산업재해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안전을 배우고 있는 대학생들과의 형평성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는 모 현장 관계자는 “최근 위험요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선임이 가능한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며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오히려 안전자격증을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성토했다.

이같이 논란이 가열되자 고용노동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교육과정을 운영함과 동시에 철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자격증의 전문성을 오히려 강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에는 자격증을 취득해도 바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존재해왔다”라며 “이번 제도는 이를 보완하여 자격시험 외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자격취득자의 실무능력과 이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실력이 있는 자와 부진한 자를 구분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교육·훈련생에 대한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그리고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재해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점점 더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논란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안전보건반장제도 대폭 축소 시행

정부가 중소현장의 안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키로 했던 ‘안전보건반장 제도’가 대폭 축소되어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규모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장의 반장 등을 안전보건반장으로 지정, 2014년까지 100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등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대폭 축소돼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당초 계획의 1/10 수준인 10만명으로 목표인원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목표인원은 2011년 1만명, 2012년 3만명, 2013년 3만명, 2014년 3만명 등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100만명의 안전보건반장을 육성하는 것이 단기간 쉽지 않은 것은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여기에 기획재정부에 해당 제도를 위해 관련예산을 요구했지만, 이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규모는 줄었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반장에 대한 사업을 매년 평가해, 미흡한 부분

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해나가기에 중점을 두면서 제도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기계 인증기준, 기계·기구별로 통일

앞으로 프레스·전단기 등 8종의 위험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기준이 위험기계·기구별로 통일·적용된다. 또 의무 안전인증기준 중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기준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가 8월 16일부터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으로는 현행 안전인증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의 전기분야 표준 중 안전과 관련된 사항만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는 위험기계·기구 인증기준을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안전과 무관한 사항까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산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한국산업표준은 생산활동 관련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제품표준(제품의 치수 등), 생산방법표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접지·배선·비상정지장치 등 각각의 위험기계·기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기분야 인증기준이 기계·기구의 종류에 관계없이 통일된다. 기존에는 공통적인 전기 관련 인증기준임에도 상당수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계·기구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컴퓨터로 작동되는 전기회로를 갖춘 프레스의 경우 비상정지장치를 별도의 배선으로 구성토록 했으나 크레인, 리프트 등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라 앞으로는 크레인, 리프트 등에도 비상정지장치를 별도의 배선으로 구성해야 한다.

건설현장 자율안전관리 대폭 강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면제제도가 더욱 강화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에서 환산재해율이 낮은 상위 20% 이내 업체 40개소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정부의 심사없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하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구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등 위험공사의 경우 건설업체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공사 착공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위험성 및 안전대책을 심사받고 6개월마다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40개소는 내년 7월 31일까지 이 제도가 면제된다.

이들 건설사는 착공하는 전국의 건설공사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고 공사 종료 시까지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체 심사 및 확인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건설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대상은 (주)대우건설, 대림산업(주), (주)포스코건설 등 시공능력 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 21개사(52.5%), 동광건설(주), (주)남흥건설, 아이에스동서(주) 등 101위 이상 건설업체 19개사(47.5%) 등 총 40개 건설사다.

한편 이번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면제제도는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기존에는 지정된 대형건설사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해제 지정 기준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지정을 유보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을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에서 '직전년도 환산재해율이 낮은 상위 20%'로 개선, 대상을 기존의 70여개사에서 40개사로 대폭 줄이고,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고성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즉시 해제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또 이행 여부도 6개월 마다 건설분야 지도사 등이 확인하게 했다.

원청 사업주, 하도급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앞으로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도급 사업주는 물론 원청 사업주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모두 하도급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는 '사내하도급근로자들이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 사업주가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재해 발생위험시 대피방법 등 산업안전·보건 조치에 대하여 수급사업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급사업주가 실시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원·수급사업주가 상호 협력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여 개선토록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